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
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상임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482호, 2024.10.22. 공포, 2025.4.23 시행)됨에 따라, 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 방안 마련(안 제8조의2 제5항 ~ 제10항)

나. 규제샌드박스 동일·유사과제 판단기준 규정(안 제40조 및 제42조의4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,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,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와 사안별 전문위원회로 구분된다.

⑥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⑦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처리한다.

제8조의2제8항(종전의 제6항)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사전검토위원회”를 “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”로, “사전검토위원회 위원”을 “그 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사전검토위원회”를 각각 “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

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2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제7항”을 “제11항”으로, “사전검토위원회”를 “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”로 한다.

3.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⑩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회의마다 제8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의3의 제목 “(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”을 “(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심의위원회에”를 “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”로, “심의위원회는”을 “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0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8조의2제8항”으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, 신속처리 전문위원회, 사안별 전문위원회”로 한다.

제4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제7항”을 “제8항”으로 한다.

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할 것
2.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내용이 유사할 것

제42조의4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⑥ 법 제38조의2제7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할 것
2.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내용이 유사할 것

제43조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법 제37조의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·요청의 접수
10.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신기술·서비스심의위원회 의 구성 등) ① ~ ④ (생략)	제8조의2(신기술·서비스심의위원회 의 구성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심의위원회는 심의·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·조정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·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 (이하 “사전검토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와 사안별 전문위원회로 구분된다.
<신 설>	⑥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<신 설>	⑦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법 제10 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사항을 처리한다.
⑥ 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사전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	⑧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 안별 전문위원회----- ----- ----- 그 위원----- ----- ----- -----

포함해야 한다. 이 경우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전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
1. 2. (생략)

3.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
<신설>

<신설>

⑦ (생략)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의3(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심의위원

----- . -----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 -----
-----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 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⑩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회의마다 제8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⑪ (현행 제7항과 같음)

⑫ ----- 제11항-----

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 -----

-----.

제8조의3(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

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~ 5. (생략)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(忌避)를 신청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(생략)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제9조(수당) 전략위원회, 실무위원회, 전문위원회,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

등) ①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 -----

---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-----.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8조의2 제8항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수당) -----
----- 심의위원회,
신속처리 전문위원회, 사안별 전문위원회-----

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40조(임시허가의 절차 등) ① ~ ⑥ (생략)

<신설>

⑦ (생략)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.

제42조의4(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) ① ~ ⑤ (생략)

<신설>

-----.

-----.

제40조(임시허가의 절차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할 것

2.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내용이 유사할 것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⑨ ----- 제8항-----

-----.

제42조의4(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법 제38조의2제7항에서 “대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, 통지 및 세부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제43조(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 ② 삭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	<u>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</u> 1. <u>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할 것</u> 2. <u>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내용이 유사할 것</u> ⑦ ----- 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43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

1. ~ 8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④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법 제37조의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·요청의 접수</u> 10. <u>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</u>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113